

의안번호	2220772
의 퇴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6. 9. 28.
추 계 번호	26C44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문화유산 가치 조사 신청)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문화유산 가치 조사 신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규모와 조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건당 조사에 따른 비용을 135만원으로 추정¹⁾하고 있고 문화유산 기초조사²⁾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및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법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문화유산 기초조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불교문화유산 일제조사	833	833	633	633	633	633
비지정 기념물유산 실태조사	240	240	240	240	200	200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	250	250	250	246	250	250
건조물 예비문화유산 조사	100	95	100	95	100	47.5
합계	1,423	1,418	1,223	1,214	1,183	1,130.5

자료: 국가유산청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조사위원 수당 75만원(25만원×3명) + 조사위원 여비 45만원(15만원×3명) + 담당직원 여비 15만원(15만원×1명)

2)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